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가단134056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동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태형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8. 체결한 매매계약은 11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2. 5. 1995.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6. 28. 2019. 6. 24.자 신탁을 원인으로 D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고 C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3. 2021. 3. 3.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2021.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20. 4. 24. E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 지상의 다가구주택 6동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 상기 주택의 내장목수 대금 관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은 119,000,000원으로 갑 (E)과 을(원고)은 합의한다.

○ 갑은 덕양구 F(G동) 매매건 관련하여 잔금 지급시 상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 하기로 한다.

다. C은 2020. 10. 1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21.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E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채무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딸인 피고와 공모하여, C으로부터 공사대금에 관한 대물변제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받기로 하면서, 2021. 1. 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C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2021. 1. 8.자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21. 1. 8.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이다. 원고는 E에 대한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21. 1. 8.자 매매계약을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21. 1. 8.자 매매계약은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21. 1. 8.자 매매계약이 C과 E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21. 1. 8.자 매매계약을 E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현자

목 록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 230㎡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층 16.24㎡

2층 106.75㎡

3층 106.75㎡

4층 88.34㎡

4층 75.99㎡(다락:바닥면적 미산입)

